

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4. 29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4. 29

(제113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건설과장 김 용 현

나. 개정사유

- 2002년 각종 기금의 통·폐합 추진계획에 의하여 1개과 2개이상 기금은 1개로 통합 운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「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」와 「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」를 통합하여 운용·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체제를 도모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목적
 -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.
- 기금의 조성
 - 재난관리법 제56조,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 -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 수입등
- 기금의 운용
 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·운용
 -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 단,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 요인이 없을 시는 사용하지 않는다
 - 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- 기금의 관리
 - 누적 잔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 하여야 할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- 기금의 운용계획
 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세입·세출 예산안을 화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기금의 용도
 -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
 - 자연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
 - 재난예방 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의 군 지원
 -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순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다.
- 회계공무원
 -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.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
 -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 - 위원은 재난 및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과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- 위원회의 기능
 -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 -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
 - 기금이 결산에 관한 사항
 - 재난관리기금의 용자 규모에 관한 사항
 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- 위원회의 운영
 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같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결산 및 보고
 -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임근성)

- 각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행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으나, 기금의 수와 규모의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통합성 저해 및 비 효율적 운영의 요소가 있어 2002. 1. 29일 시달된 각종 기금 동·폐합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·폐합 조례로

절차상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개정
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7. 첨부 : 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화순군재난·재해관리기금운용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화순군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용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재난관리기금

- 가.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- 나. 기금의 운용수익금
- 다. 기타 수입금 등

2. 재해대책기금

- 가.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
- 나. 기금의 운용수익금
- 다. 기타 수입금 등

제3조(기금의 운용) ①화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1항에 의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.

②군수는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적립기금으로 하고 그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총당금으로 운용한다. 단,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사용요인이 없을 시는 사용하지 않는다.

③대규모 재난 또는 재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사업총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) ①군수는 누적잔액(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이자를 말한다)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할 기금액(이하 “장기 예치기금액”이라 한다)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(장기예치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)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장기예치기금액은 화순군의 지정금고(지방재정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)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③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의 운용계획)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조성계획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운용방법
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수입·세출예산안을 화순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용도)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

1.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,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
2. 자연관리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
3. 재난예방 또는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의 군 지원

②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화순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.

②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 되고, 기금출납원은 재난방재담당이 된다.

제8조(기금의 회계관리) ①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하여서는 화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.

②제7조의 회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9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.

④위원은 재난 및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중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재난방재담당이 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